

창원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가단1250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2022. 10. 25.

판결 선고2022.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21. 1.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1. 27. 접수 제75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2018. 12. 28. 9,5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는 그 중 7,600만 원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1. 7.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은행에 2021. 11. 19. 보증원금 및 이자 합계 77,793,0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보증채무 이행에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8%이고, 법적절차비용 1,403,458원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21. 1. 27.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2021. 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1. 1. 27. 접수 제 752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이 2018. 12. 28.

체결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 1. 27.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설정일로부터 수개월 이내인 2021. 7.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다.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21. 11. 22. 변제액 4,5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일부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채권액은 일부 이전받은 위 담보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같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원고외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류결정 및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무초과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E,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일인 2021. 1. 27. 무렵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합계 572,486,680원 상당, 소극 재산은 2,284,119,960원 상당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합계금	558,886,680	2021. 12. 7. 기준
2	(차량번호 1) 라보보냉탑차 2016년식	7,700,000	최고가 시세기준
3	(차량번호 2) 포터Ⅱ 냉동탑차 2008년식	5,900,000	
	합계금	572,486,680	

[소극재산]

1	D은행	일반자금대출	95,000,000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6,000,000		
3	피고	140,000,000	피고 주장	
4	(주)F	100,000,000		
5	G(주)	미수금채권	85,119,960	
6	물품대금	7,000,000		
7	H은행	자동차근저당 채권가액	917,000,000	
	운전자금(일반) 대출	40,000,000		
8	기업은행	구매자금 대출	19,000,000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신탁포함)	80,000,000		
9	[보증보험	운전자금(일반) 대출	1,000,000	
	이행지급보증	1,000,000		
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대출(종합통장대출)	83,000,000	
11	J기금	지급보증	440,000,000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	10,000,000	
13	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	10,000,000	
	합계금	2,284,119,960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미수금이 1억 원 이상인 상태에서 납품중단을 통보하자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5. 28.부터 2020.말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 K 갈비살 등을 공급한 거래에 기한 월별 미수금은 1,000여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소외 회사는 그 미수금을 매달 수차례씩 변제한 사실, 2020. 12.경 소외 회사는 합계 7,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2020. 12. 31.경 미수금 잔액은 약 1억 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20. 1.부터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이후 피고는 2021. 2. 25.부터 2021. 7. 31.까지 공급한 내역이 있긴 하나 기존 거래내역에 비해 불규칙하고 적은 물량을 거래하다 결국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미수금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기존 미지급 대금이나 향후 증감하여 발생할 미수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이후 거래량을 감소시키다가 결국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채권자 중 1인에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수익자의 악의 여부

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미수금이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 거래량을 감소시켰는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문선주

별지